

[변경대비표]

1. 펀드명 : 타임폴리오워드타임증권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

2. 작성기준일 : 2023.06.14

3. 정정사유 :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(제81조, 제93조, 제233조)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(2023.01.01 시행)
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(2023.02.20 시행)

4. 효력발생일 : 2023.07.26

<신탁계약서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 43 조(투자신탁의 해지)	자본시장법 시행령제 223 조 개정반영 (2022.08.30)	①-----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~2.<생략>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경과 한 이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	①-----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~2.<이하동일> 3.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 년(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.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(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

<투자설명서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위험등급	결산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기준 변경	(주)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<추가>	(주)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<u>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 년간 수익률 변동성(연환산 표준편차)은 10.3%로서 위험등급 6 등급 중 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에 해당합니다. 다만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해야 하는 대상이나, 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하는 펀드로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일반사모펀드의 특성 및 위험등급을 고려하여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재산정하지 않고 투자 대상자산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6등급 중 1 등급을 유지합니다.</u>
투자비용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
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	업데이트 주식추가	- <추가>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(주3)설정이후 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설정일 이후 수익률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. 최근n년 수익률의 경우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n년 미만일 시, 기재하지 아니합니다.																
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															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												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												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															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투자위험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(2023.02.20 시행)	<신설>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증권대차 거래 위험</td> <td>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td> </tr> </table>	증권대차 거래 위험	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														
증권대차 거래 위험	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																		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결산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기준 변경	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으로 위험등급이 결정됩니다. 설정 후 3년이 경과할 경우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재산정될 예정이며, 이 때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	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(연환산 표준편차)은 10.3%로서 위험등급 6등급 중 3등급(다소 높은 위험)에 해당합니다. 다만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해야 하는 대상이나, 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하는 펀드로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일반사모펀드의 특성 및 위험등급을 고려하여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재산정하지 않고 투자 대상자산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6등급 중 1등급을 유지합니다.													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													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 개정 사항 반영 (2023.01.01 시행)	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C-P, C-Pe, S-P 가입자에 한함]	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C-P, C-Pe, S-P 가입자에 한함]					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주요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납입요건</td> <td>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(이하 "전환금액"이라 한다)</td> </tr> <tr> <td>수령요건</td> <td>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</td> </tr> <tr> <td>세액공제</td> <td>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. 단, 2022년 1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내용	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(이하 "전환금액"이라 한다)	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	세액공제	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. 단, 2022년 12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주요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납입요건</td> <td>가입기간 5년 이상,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1. 연 1,800만원 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, 전환금액이라 한다)</td> </tr> <tr> <td>수령요건</td> <td>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</td> </tr> <tr> <td>세액공제</td> <td>[납입금액]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내용	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1. 연 1,800만원 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, 전환금액이라 한다)	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	세액공제	[납입금액]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
구분	주요내용																		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(이하 "전환금액"이라 한다)																		
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																		
세액공제	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. 단, 2022년 12																		
구분	주요내용																		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1. 연 1,800만원 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, 전환금액이라 한다)																		
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																		
세액공제	[납입금액]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																		

		<p>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 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</p> <p>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</p> <p>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</p> <p>[세액공제]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	<p>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다만,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.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% 또는 300 만원(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</p> <p>[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황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]</p>
	연금수령 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	연금소득세 5.5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 1.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: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% 2.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: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%
	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(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)	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연금소득(공적연금소득 제외)으로 분리과세 -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-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-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,200만원 이하인 경우	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1.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.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3. 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,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단, 연간 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가능 (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
	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(연금수령 요건을 충족)	기타소득세 16.5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기준 적용	

		<table border="1"> <tr> <td data-bbox="507 100 646 235">하지 못하고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)</td> <td data-bbox="646 100 999 235"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507 235 646 302">해지가산세</td> <td data-bbox="646 235 999 302">없음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507 302 646 369">연금계좌승계</td> <td data-bbox="646 302 999 369">상속인(배우자)이 승계 가능</td> </tr> </table> <p>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</p> <p>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 판매회사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(이하“납입증명서”라 한다)를 발급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매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.</p>	하지 못하고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)		해지가산세	없음	연금계좌승계	상속인(배우자)이 승계 가능	<table border="1"> <tr> <td data-bbox="1005 100 1149 358">연금외수령시 과세</td> <td data-bbox="1149 100 1503 358">기타소득세 16.5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기준 적용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005 358 1149 392">해지가산세</td> <td data-bbox="1149 358 1503 392">없음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005 392 1149 963">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사유</td> <td data-bbox="1149 392 1503 963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천재지변 -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 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-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 결의, 파산 선고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005 963 1149 1064">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</td> <td data-bbox="1149 963 1503 1064">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지방소득세 포함)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005 1064 1149 1131">연금계좌승계</td> <td data-bbox="1149 1064 1503 1131">상속인(배우자)이 승계 가능</td> </tr> </table> <p>※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,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※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,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,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</p> <p>※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(https://100lifeplan.fss.or.kr)의 '연금세제안내'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기준 적용	해지가산세	없음	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천재지변 -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 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-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 결의, 파산 선고 	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지방소득세 포함)	연금계좌승계	상속인(배우자)이 승계 가능
하지 못하고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)																			
해지가산세	없음																		
연금계좌승계	상속인(배우자)이 승계 가능																		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기준 적용																		
해지가산세	없음																		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천재지변 -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 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-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 결의, 파산 선고 																		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지방소득세 포함)																		
연금계좌승계	상속인(배우자)이 승계 가능																		
[제 2 부 별첨 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															
나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(1) 투자대상	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1 조에 따른	주 4) --또한,----- <u>초과일부터 3 월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</u>	주 4)---또한,--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																

	문구 보완		
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(2023.02.20 시행) 증권대차거래의 목적 기재	주 5) <신설> 주 6) <신설>	주 5) 증권의 대여: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 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의 대여 를 진행할 수 있음 (가)수익률 증진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 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(나)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6) 증권의 차입: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 의 시장위험 해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 행할 수 있음
나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(2) 투자제한	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1 조에 따른 문구 보완	주 1) 아래-- 초과일부터 <u>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</u>	주 1) 아래-- 초과일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 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나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(3) 편입한 집합투 자증권에 관한 사 항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업데이트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(2023.02.20 시행)	- <신설>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(주 2)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 료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. (발생내역 없음) (주 3)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 료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. (발생내역 없음) <주식의 매매회전을> <표 1> 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 <표 2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업데이트 및 연평균수익률 주석추가	- <추가>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(주3)설정이후 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 우 설정일 이후 수익률을 기재하지 아니합 니다. 최근n년 수익률의 경우 마지막 수익 를 측정대상기간이 n년 미만일 시, 기재하 지 아니합니다.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
<p>2.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령제 223 조 개정반영 및 문구 보완</p>	<p>[임의해지]</p> <p>집합투자업자는---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/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	<p>나. 임의해지</p> <p>집합투자업자는---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(1) <u>수익자</u> 전원이 동의한 경우</p> <p>(2)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</p> <p>(3) <u>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(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</p> <p>(4) <u>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</p>
<p>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정기보고서 (2) 자산운용보고서</p>	<p>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(2022.08.30 시행)</p>	<p>●<추가>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-----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</p>	<p>● <u>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-----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</u></p>
<p>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3 조 개정반영 (2022.08.30 시행)</p>	<p>8)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)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	<p>8) <u>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(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u></p> <p>9) <u>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(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u></p>

<표1>

<주식의 매매회전율>

(단위 : 백만원, 주, %)

주식매수		주식매도		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(B)	매매회전율(A/B)	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
수량	금액	수량	금액(A)			
-	-	-	-	-	-	31.96

(주1) 동종유형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(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외)을 의미하며,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되는 자료입니다.

<표2>

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거래 금액(A)	당기		거래 금액(A)	전기	
		거래비용			거래비용	
		금액(B)	거래비용 비율(B/A)		금액(B)	거래비용 비율(B/A)
주식	-	-	-	-	-	-
주식 이외의 증권(채권 등)	-	-	-	-	-	-
부동산	-	-	-	-	-	-
장내파생상품	-	-	-	-	-	-
장외파생상품	-	-	-	-	-	-
합 계	-	-	-	-	-	-

(주1) 거래비용은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(수익적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)은 생략 가능합니다.